

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종전에는 청소년 선도 및 지도단속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였으며, 향후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시 대상예정지는 어디인지
- 답 : ①종전에 청소년 지도단속은 군, 경찰서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고성읍, 회화면 일원을 위주로 추진하였음.  
②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대상예정지는 군내에는 없다고 판단되나 관할지역 주민 500명이상 지정요구시나 기타 설정이 필요한 지역 인정시 공청회,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예정.
- 문 : 본 조례안이 고성군 실정으로는 조례의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데
- 답 : 경남도로 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의 근거에 의거 향후 청소년 유해요인의 발생에 따른 사전 예방책으로 관련 법령을 마련하기 위함.

## 6. 토 론

- <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>
- 찬성 : 향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사전 보호키 위하여 사전 대비책으로 관련 법령을 마련함은 타당함.
- 반대 : 안 제3조의 출입제한구역 지정, 출입제한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은 고성군 실정과는 동떨어진 사항으로 필요성이 없으므로 향후 추이를 판단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보류 조치함이 타당함.

## 7. 심사결과

- 1998. 7. 3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